

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연구센터 복무 규정

제 정 : 2009. 3. 1.
개 정 : 2011. 5. 1.
개 정 : 2012. 6. 22.

제1조(적용) 이 복무규정은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연구센터(이하 ‘HK센터’)의 HK교원에 적용한다.

제2조(근무시간) ① HK교원은 강의 및 외부 학술활동 시간을 제외하고 주중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HK교원은 매년 연구계획을 수립, 제출하고 연구실적을 보고한다.

제3조(겸직금지) HK교원은 HK센터 외부에서 인건비성 직책을 겸할 수 없다.

제3조의 2(출강 및 수강) ① HK교수는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소장 승인 하에 주당 3시간 이내로 할 수 있다. 단 아젠다 관련 강의는 추가 허용한다.

② HK연구교수는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소장 승인 하에 주당 6시간 이내로 할 수 있다. 단 아젠다 관련 강의는 추가 허용한다.

③ 외부출강일은 주1일에 한하며, 강의 개시 2개월전에 소장의 허가 후 타교출강허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조(팀 활동) ① HK교원은 기본 연구팀 가운데 하나에 소속하여 팀 내 공동연구 및 연구소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.

② HK센터장(이하 ‘소장’ 이라 한다)에의 제반 보고는 팀장을 경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사업담당) ① HK교원은 연구 활동 및 학술활동 외에 HK사업을 담당한다.

② HK사업 담당자는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정기적 사업 보고의 의무를 지닌다.

제6조(개인연구) ① HK교원은 원칙적으로 연구역량의 70% 이상을 공동연구와 관련된 개인연구에 투여할 수 있도록 한다. 이때 개인연구라 함은 연구 결과가 당사자의 업적으로 산정되는 경우를 말하며, 이 경우에도 그 내용이 HK센터의 거시적 구도와 주제 범위에 포괄되어야 한다.

② HK교수는 임용된 후 재임 기간의 HK센터와 관련된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.

제7조(공동연구) HK교원은 공동연구 주제 개발과 공동연구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, 그 경우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.

- 제8조(대의 학술활동)** ① HK교원은 HK센터 내부의 공동연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외 학술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.
- ② 한국연구재단을 포함한 연구비 수여 기관의 연구 프로젝트 참여는 사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제8조의 2(해외 학술활동)** ① HK교원은 국제학술회의 참석, 자료조사 등의 해외 학술활동을 수행할 때 HK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해외 학술활동은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.

- 제9조(출장·결근의 관리)** ① HK교원이 출장 시 총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HK교원이 개인 학술활동, 질병치료, 기타 사유로 결근 시 사전 보고하고, 공휴일을 포함하여 3일 이상 결근 시 사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출장·결근의 보고와 승인 등의 기록은 불교문화연구소에서 관리한다.
- ④ 연구보조원은 결근 시 해당 연구팀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기록 및 자료 관리)** ① HK센터 전체의 회의와 학술행사의 기록 및 자료는 행정지원부 서나 소장이 지명하는 HK교원이 관리한다.
- ② 연구팀별 회의, 학술행사, 공동연구의 기록 및 자료는 팀 내에 담당자를 두어 관리한다.

제11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HK지원 사업 관리운영지침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2년 6월22일부터 시행한다.